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47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1월 8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재난·안전에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내 발생할 수 있는 전기, 가스 등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기에 위험요소를 완화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,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
나. 안전점검 등 사업의 지원 신청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다.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라. 전기, 가스, 보일러, 소방 등 전문 분야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마. 안전점검 등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홍보 책무 부여(안 제10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3, FAX 820-1474, E-mail : jurakim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과 신체, 재산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2. 「치매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
4.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
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
8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(家長)인 경우
9.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

이라 한다)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(이하 “안전점검 등”이라 한다)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적용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.

제6조(지원 신청 등) ①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안전취약계층은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점검 등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자에게 제8조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)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

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재난·안전 및 복지 담당 부서의 공무원 2명
2. 소방 예방 분야 공무원 2명
3. 통장연합회 회원
4. 그 밖에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이전 지원대상자 선정 시 누락된 가구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」에 따라 작성, 공개 및 보존한다.

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사업의 추진)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교육
2. 전기 및 가스시설 관련 안전장치의 부착
3.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

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

4. 스프레이형 소화기 및 구급상자 등 안전용품의 지급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전기, 가스, 보일러,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또는 업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의 협약서를 작성·체결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

2.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

4.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

5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·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때

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홍보)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동 주민센터, 구 소식지,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예산확보 등)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8조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등 지원신청서(제6조 관련)

접수번호	접수일자		처리일자	
지원대상자	성명	생년월일		세대원수
	주소			전화번호(휴대폰)
	대상자 구분	☐ 장애인	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담당공무원 확인란
		☐ 치매 환자	☐ 다문화가족	
	☐ 정신질환자	☐ 청소년 가장		
	☐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	☐ 기타()		
	☐ 한부모가족			
지원분야	☐ 전기 ☐ 가스·보일러 ☐ 소방 ☐ 안전용품 보급 ☐ 기타()			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거환경 안전점검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동작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.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 : 장애인 복지카드,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)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